

##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원 성 두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장 은 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심리사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 등 대한민국의 심리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리’ 또는 ‘심리상담’의 키워드로 심리서비스 관련 78개 법령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는 심리서비스 관련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심리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적용 대상 또한 대부분 정신질환자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 발급 임상심리사가 있으나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다. 한편,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부적격한 민간 자격증의 난립으로 인해 일반인이 효과성을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심리서비스 측면에서 보건복지 영역은 심리서비스 수요에 비해 전달체계가 부족한 데 반해,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법무 및 사법체계, 경찰, 국방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심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수준의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국민의 심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리서비스, 심리사, 심리치료, 심리상담, 법령, 현황

\* 본 논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결과보고서(한국심리학회, 202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장은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190,  
Tel: 042-828-3312, E-mail: [ejchang@kbtus.ac.kr](mailto:ejchang@kbtus.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2013년에 한국의 정신건강 체계에 대해 3가지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Kim & Yang, 2013). 첫째, 입원중심 치료에서 지역기반 치료로의 전환, 둘째,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 셋째, 관리체계와 리더십이다. 특히, 구체적 제안으로 심리치료(혹은 '심리학적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구)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정신질환 이외에도 경도~중등도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0일 제1회 정신건강의 날에는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10. 09).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는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및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및 회복 증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 개선 등 5가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 중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중 <중경증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표준 모형>에 심리지원팀 신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에 따르면, 전국 성인 5,511명(만 18세 이상 ~ 만 79세 이하)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평생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2.1%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다.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연도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까지 증가추세였지만 2021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16.5%→2021년 11.5%).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제한적인 운영이나 폐쇄와 같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은 여전히 높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국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김나은 등, 2020). 한편, 국민 정신건강 증진 관련 의료서비스(간호서비스 포함),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법·행정적으로 개념이나 전달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으나 심리서비스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심리지원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 기본 서비스에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포함하고 있어(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 서비스 내용이 심리상담을 제외하고는 심리서비스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 서정숙 의원 등(2022)이 ‘심리사법안’(의안번호 2115453)을 발의하였다(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4. 29). 이 발의안 제2조(정의)는 ‘심리서비스’를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sup>1)</sup> 심리교육,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심리사 법안은 “심리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법이 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실무수련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리서비스 및 심리사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심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국내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국내에서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심리학회(APA, 2022)는 심리치료/심리학적 치료(psychological treatment)를 정신역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등의 전통적인 “talk therapy”인 심리치료/심리상담(psychotherapy)을 포함하여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이나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과 같은 심리학적 원리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개입을 포괄하는 용어로 전통적인 심리치료/심리상담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상담(counseling)은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색하고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소위 “치료의 개념”이 전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법령 현황 및 심리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의 한계점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심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혼용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심리서비스가 심리상담이며, 더불어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법령이 제한적이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심리’ 또는 ‘심리상담’의 키워드로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고 그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20. 10. 30. 기준).

### 심리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의 한계점

국민의 심리서비스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원지코리아컨설팅(주), 2018) 불구하고 총 78개에 달하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sup>2)</sup>에

표 1.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법령 현황 요약

법령 종류	개수	비고
법률	32	
대통령령	11	
부령	5	
자치법규	24	
행정규칙	6	훈령, 예규, 고시 포함
총계	78	

2) 법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헌법(국회와 국민), 법률(국회),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정부부처), 조례(지방자치의회)로 구분되고 순차적으로 그 위계가 나뉘어짐. 한편, 고시, 훈령, 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절차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나(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본 논문에서 법령으로 포함시킴.

는 심리서비스의 정의, 범위, 시행 주체와 관련된 법률 수준의 모범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특별법으로서 상당 부분 정신질환자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므로 일반법으로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이 법에 따라 하위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하위 법령에서는 심리서비스 관련 ‘심리지원’, ‘심리치료’, ‘심리상담’, ‘일반생활 상담’, ‘정신건강치료’, ‘정서치료’ 등의 용어들이 구체적인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78개 국내 법령은 일관성 없이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건강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초래하고 있고, 정신건강서비스 혹은 심리서비스 관련 예산 낭비와 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심리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의 자격과 관련해 대부분의 법령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심리서비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학 전공자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의 실시자로 사회복지사2급 이상(심리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심리사 관련 기본법인 모범의 부재로 유사 심리서비스 제공자들이 학위 및 자격증과 무관하게 심리사를 자처하거나 심리사의 역할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심리서비스를 부적격하고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심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인해(원지코리아컨설팅㈜, 2018) 심리지원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상위법 없이 지자체마다 심리서비스의

정의와 그 범위가 상이하거나 일부 조례의 경우 타 지자체의 내용과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한편,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와 심각도의 증가(박용천 등, 2020;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와 관련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심리서비스의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 특히 심리사 법률 제정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정의, 업무의 범위, 시행 주체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한 분야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심리사에 관한 모법인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심리사와 심리서비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도 제한적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정의)와 달리 일반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증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위법으로서의 모법인 기본법

부재로 인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의료기관 내 인지행동치료 보험 급여화 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과(전공의 3년차 이상)와 신경과 전문의로 시행주체를 제한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는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집단인지치료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은 심리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세부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기본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심리학자가 실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가와 달리,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행위 주체와 의료비 청구 주체가 불일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심리학자의 활동 범위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사업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예: 임상심리사 개별업무의 활동 제한).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국립정신건강센터, 2022)을 고려할 때, 심리 직역은 타 직역에 비해 3년간의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을 배출해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심리사의 주요 분야를 선진 해외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인 임상, 상담, 범죄, 학교, 발달, 중독, 산업 등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의 석사 학위 이상의 최상위 자격을 갖춘 심리사(표 3. 참조)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심리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인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 정신건강 취약

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한편, 치료감호법(법무부)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부처 법령에서도 비일관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모법 부재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현재 독립적인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모법인 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증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자격증이거나 국가전문자격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복지법인 특별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증인 보건복지부 발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인력공단 발급 임상심리사가 있다(표 2)<sup>3)</sup>. 발급 현황을 고려할 때 해외의 심리사 발급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전문가 수준의 인력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전체 자격 취득자 중 56.1%가 1급인데 반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

3) 심리 관련 국가자격증으로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나 학문적 배경이 심리학 중심인 심리사가 아닌 데다, 자격 취득이 체계적인 실제 사례에 대한 실무 수련과정이 없거나 가상사례에 대한 제한된 시간의 연수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표 2.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수여 및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심리학 석사 이상, 등록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련 (2급 취득 후 인증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취득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석사 이상 3년 수련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함)</li> <li>• 2급: 심리학 학사 이상, 등록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심리학 분야 석사 학위+2년 이상 실습 또는 실무,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li> <li>• 2급: 전공불문 학사 이상+1년 이상 실습</li> </ul>
실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명시된 정확한 규정 존재</li> <li>• 현장 실사 실시</li> <li>• 주요 이론을 대학(원)에서 선수강하거나 증빙해야 함</li> <li>• 실습과목: 심리평가, 심리치료, 정신사회 재활 실습, 개인사례분석 등</li> </ul>	규정 없음
수련요건	석사 졸업 후 인증된 기관에서 매해 1000시간 이상 3년을 요구함.	규정 없음
보수교육	매년 12시간	규정 없음
발급현황	2021년 12월 1일 기준 • 1급: 1,823명 • 2급: 1,428명 총 3,251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 1급: 886명 • 2급: 12,492명 총 13,378명

리사 1급 취득자는 6.6%에 불과하여 국가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의 전문성의 격차가 현저하다.

현재로서는 국가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 중 학위 요건 및 수련 과정의 체계 면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OECD 수준의 ‘심리사’ 자격에 해당하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인력 확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매년 배출 인원의 10%만이 지역사회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 변화에 맞춰 심리학

적 평가 및 심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 직역의 전문요원 유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또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중 임상심리 직역의 수는 감소 추세이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그러나 2021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 보고서상 임상심리 직역은 2010년 후반에 이르러 다소 상승추세지만 여전히 배출된 전체 정신건강전문요원 대비 20%(1급과 2급 합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회 정신건강 사업에 참여할 심리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직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력을 고려한 직역별로 차등화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오래전부터 하위급수의 질적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특히 2급의 경우)는 자격취득 및 관리 과정에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실습 및 수련 규정 미비, 심리상담 고유 업무라는 규정 부재, 심리상담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 부재, 심리서비스와 관련된 핵심과목이 필수가 아니어도 자격취득 가능, 보수교육이나 윤리교육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재하여 전문성 유지 곤란 등이다(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19).

한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에도 법에는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개별(또는 고유)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증진사업에서 실제로는 주로 공통 업무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직역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며 결국 심리서비스 제공에서 심리 직역의 전문성 발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민간기관 발급 심리사 관련 자격증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에서 ‘심리’, ‘상담’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민간 등록 자격증 총 5,166개(한국심리학회 발급 자격증 10종 포함)가 검색되었다(2020. 10. 30. 기준). 이 중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이 차지하

는 비율은 3,773종인 7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심리사 관련 민간 자격증은 취득과정이나 자격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자격증이 기본적인 전문교육이나 윤리 기준이 부재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예: 성추행, 사기, 문제증상의 악화 등)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예: 김창욱 등, 2022; 박다혜, 2019; 이내규, 2019).

보건복지부가 유사명칭 민간자격 신설 금지(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445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17년 7월)를 발표한 이후로도 모범이 없는 ‘심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동일명칭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되고 있다. 심리서비스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리상담 관련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예: 이창진, 2019). 이는 현행 법령으로는 심리사 관련 민간 자격증 남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규제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간 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심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어떤 제공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및 수련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발급 민간 자격증 소

표 3. 한국심리학회 최상위 자격증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분과학회	자격 명칭	최초발급	발급인원수
임상	임상심리전문가	1973년	1,819
상담	상담심리사 1급	1973년	1,799
산업 및 조직	인사조직심리 전문가	2001년	30
사회 및 성격	범죄심리사 전문가	2006년	113
발달	발달심리사 1급	1989년	129
인지 및 생물	인지학습심리사 1급	2008년	33
건강	건강심리전문가	2000년	126
학교	학교심리사 1급	2011년	81
중독	중독심리 전문가	2009년	279
코칭	코칭심리사 1급	2015년	24
총계			4,433

지자 중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4,433명에 달하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공공 분야에서 심리서비스 제공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결국은 심리학 관련 유사 자격증 발급 남발로 인해 심리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자문 등 심리서비스 관련 국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전국 298개 기관 중 182개(61.1%)가 정신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고(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일부 정신건강복지센터(42개, 14.1%)와 정신재활시설(73개, 24.5%)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련기관에 참여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1개,

0.3%)은 입소자의 상태 및 지도감독자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간호 직역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배출되고,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시설에서 수련하고 있다.

3개 직역 중 임상심리 직역은 유일하게 1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있다(83%). 반면, 2급 과정은 주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17%)에서 수련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수련기관(특히 의료기관)은 수련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수련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배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개정을 통한 수련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를 통한 국민들에 대한 심리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이 종사하며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예: 스마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기관(예: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등이 수련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각 직역별 채용기준과 정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내에서 일부 직역으로 편중해 환자 수 대비 총 정원을 맞추고 있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충분히 선발되고 배치되지 못해 심리학적 개입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2019년 말 기준 전국 251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6개, 기초 23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와 재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이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경험 많은 임상가의 처우 개선이 어렵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의 심리적 소진을 야기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임상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나은 등, 2020).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종사자(임상심리사: 6.8%, 간호 12.5%, 사회복지 31.0%)(국립정신건강센터, 2018)의 불균형은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야기한다. 따라서 각 직역별 고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역별 채용인원을 할당해서 모집하고, 전체 예산 중 전문가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허용하는 합리적인 예산계획 및 집행과 더불어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9년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실태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9)에 따르면,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할 때, 필요하지만 부족한 복지자원으로 꼽는 1순위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지원(33.6%)이었고, 원활한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관련 자원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내에 심리사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 ‘심리 영역’이 투입되면 훨씬 품질이 좋아질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행인력의 자격기준에 음악, 미술, 언어 등의 영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침례신학대학교, 2019). 이런 상황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 심리서비스를 학력과 소정의 수련 경험을 충분히 갖춘 심리전문가가 담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일반 국민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아이러니한 것은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심리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심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무, 경찰, 국방, 소방, 교육, 문화체육 등의 영역에서 심리 인력 활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심리사’와 ‘심리서비스’에 대한 모범수준인 기본법의 부재로 인한 법적, 제도적 기준의 미비로 인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심리서비스

스 제공 인력의 기준 역시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공자인 전문가 역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의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전례 없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등 심리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의 활동 관련 법제화가 미비하여 심리사회적 취약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결론 및 향후 방향성 제언

현행 국내 법령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사 및 심리서비스의 정의, 범위 및 행위 주체를 법률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서비스는 분절적이고 제한적이다. 한편 심리서비스 관련 업무와 심리사의 정의, 범위, 시행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서비스 대상을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모법인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만 근거하여 심리사의 일부 기능과 역할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심리서비스 현장에서 제한점과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심리사 관련 자격 현황 면에서는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 중 체계적인 수련 운영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다. 반면, 국가전문자격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인력관리공단 발급 임상심리사는 전공조차 규정하지 않는 등 자격 취득 및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하위 급수자의 전문성에서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유사 심리서비스 제공자들이 학위 및 자격증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어 심리서비스 수요가 높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심리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이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OECD, 2014)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직결되는 심리서비스 관련 무분별한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나아가, 공공 심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법령 부재로 인해 보건복지 영역에서 대부분 복지/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 국민 대상의 심리서비스 인프라와 전달체계, 특히, 전문 인력 공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전문자격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가 대한민국에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오히려 보건복지 영역 이외의 법무, 경찰, 국방, 교육 등은 심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다양하고 급증하는 정신건강 수요를 감안할 때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다를 수 없는 심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사와 심리서비스 관련 정의, 제공 주체, 업무 범위와 관련해 모범 수준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할 때 서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심리사법안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심리사 제도를 마련하는데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화는 2021년에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국민의 마음을 돌보는 나라’로서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 나아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인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 주요 국가의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을 분석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심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 수준의 심리사 핵심역량을 지닌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국제심리연맹 등에서 제안한 심리학적 지식과 이론, 기술, 수련 등을 포함하는 핵심역량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국가에서 심리사가 국민의 자살예방에 기여하는 것처럼(한국심리학회, 2020) 대한민국에서도 최상위 자살율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이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 수준의 모범에 기초해 정신건강복지법 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심리 지역의 개별 업무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신의료기

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심리 지역의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심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련기관을 정신의료기관 이외에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OECD의 2013년 권고안에서처럼 경도에서 중등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들에게 심리서비스와 심리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 나아가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으로 수련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심리지원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하고(예: 의료기관 내 심리사의 개인인지행동치료의 보험 급여화) 심리지원센터의 전국적 보급 등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OECD 정신건강 핵심인력인 심리사의 법제화와 역할을 규명하여, 이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심리학 전공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도 심리지원 관련 전문성 및 윤리의식의 고취 이외에 행정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인력으로서 회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키우는 것 또한 절실하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처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APA (2022. 07. 07).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https://dictionary.apa.org>
- Bahk, Y.C., Park, K.H., Kim, N.E., Lee, J.H.,  
Cho, S.R., Jang, J.H., Jung, D.W., Chang,  
E.J., & Choi, K.H (2020).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55-367.  
<http://kjp-clinical.org/xml/26947/26947.pdf>
- Joint operation of related ministries (2021).  
*Comprehensive Measures for Mental Health - 2nd  
Basic Plan for Mental Health Welfare (Draft)*.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0584888536\\_20210114094128.hwp  
&rs=/upload/viewer/result/202208/](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0584888536_20210114094128.hwp&rs=/upload/viewer/result/202208/)
- Kim, C.W., Lee, D.H., Jung, J.Y., & Park, J.G.  
(2022. 06. 04). *Sex Offenders Can Get Body  
Therapy Okay... the lawlessness of the law*.  
KUKMINILBO.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  
017145651&code=61121111&sid1=soc](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45651&code=61121111&sid1=soc)
- Kim, N., Je, C., & Choi, K.H (2020).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fter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9(1),  
1-26.  
<http://dx.doi.org/10.22257/kjp.2020.3.39.1.1>
- Kim, T. H., & Yang, Y. J. (2013). Korean  
translation of 'Mental Health Korea: OECD  
review and recommendations 2013 summary'.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3, 236-239.  
[https://kmbase.medric.or.kr/KMID/1039620130  
030030236](https://kmbase.medric.or.kr/KMID/1039620130030030236)
-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2019). *A  
Basic Study on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Research Report of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 Korea Governmental Briefing (2017. 10. 10). *2017  
Mental Health Day Celebration*.  
[https://www.korea.kr/news/policyPhotoView.do?  
bbsKey=27142&themekey=dept\\_activity](https://www.korea.kr/news/policyPhotoView.do?bbsKey=27142&themekey=dept_activit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Mental Health Welfare  
(2021-2025)*.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  
e=policy&seq=29116](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policy&seq=29116)
-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2019).  
*An Investigation on the Performance of Case  
Managers*.
-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2022).  
*Introduction to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in 2022*.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  
or/rssi/view2.do?p\\_sn=8](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rssi/view2.do?p_sn=8)
- Korean Clinical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2).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Training  
Guidelines for 2022*.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Research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 the  
COVID-19 era*.

- Lee, N.G. (2019. 07. 19). *The fact-finding: Som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are dangerous*. [60 minutes tracking]. KBS1.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pc/index.html>
- Lee, C.J. (2019. 10. 21). *Psychological counseling, private qualification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onducting a survey*. Medical Times.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29691>.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8). *2018 Repor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http://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jsessionid=61CeW2nwG7BR6jDTiI2IGDWSIUU1n3keMGWKurvsAQR8Fw10V7aelWx1lruahTfu.mohwwas1\\_servlet\\_engine1?no=8423&fno=106&menu\\_cd=04\\_02\\_00\\_03&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http://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jsessionid=61CeW2nwG7BR6jDTiI2IGDWSIUU1n3keMGWKurvsAQR8Fw10V7aelWx1lruahTfu.mohwwas1_servlet_engine1?no=8423&fno=106&menu_cd=04_02_00_03&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https://mhs.ncmh.go.kr/front/reference/referenceDetail.do>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2). *Guidelines for running system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http://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jsessionid=ALq1oh0esNk89JzCDKUovyLp3iWcXvqulOdETOEbrg31hptrprP8HhECl1ikiBho.mohwwas2\\_servlet\\_engine1?no=9087&fno=37&menu\\_cd=01\\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http://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jsessionid=ALq1oh0esNk89JzCDKUovyLp3iWcXvqulOdETOEbrg31hptrprP8HhECl1ikiBho.mohwwas2_servlet_engine1?no=9087&fno=37&menu_cd=01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
- OECD (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08445-en>.
- Park, D.H. (2019. 06. 27). *Sexual violence in a psychological counseling room that is not recognized as a "crime" even if it is a "illegal act" due to civil reasons*. The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9577.html>
- Seo, J.S., Koo, J.G., Kim, M.A., Kim, S.S., Park, S.Y., Lee, J.B., Jeon, J.H., Cho, E.H., Cho, T.Y., Choi, C.S., & Hwangbo, S.H. (2022). *The Bill of Licensed Psychologists*.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O2H014Z2S1V1Z6G0Z7E4T0C2K2S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O2H014Z2S1V1Z6G0Z7E4T0C2K2S4)
- WinGKorea Consulting (2018). *Report on the Public Percept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 1차원고접수 : 2022. 05. 28.  
2차원고접수 : 2022. 07. 13.  
최종재결정 : 2022. 08. 01.

##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Sung-Doo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Dague Catholic University

Eun Jin Ch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psychological services such as legislation, qual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services to improve the national level of mental health. For this, 78 existing laws were found and analyzed using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s key words on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As a result, there was no distinct law solely discussing the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only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short, Mental Health Welfare Act) defines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work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one of the mental health specialists. However, this law has a limited scope of psychological services that could be offered and tends to be limited to those with mental illness. For licenses offered by governments for qualifications, there ar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linical psychologist licens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but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expertise between these two is remarkabl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identify a reliable service provider because of prevalence of inappropriate licenses issued by unqualified private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public psychological services,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lacks a delive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demand for psychological services, while psychological professionals are proactively employed by various other field such as Ministry of National Just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can be stated that an independent legislation specifying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of a license for global-standard psychologist is necessary.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improve the public access to psychological services, thereby advancing the people's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 Psychological Services, Psychologist, Legislation, Licensed Psychologist, psychological treatments, psychological counseling, Status Quo.